

성북의 미래, 현장에서 답을 찾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북 구
(아동청소년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3
----------	-----

제출년월 : 2024년 4월
제출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을 정비하고, 현실적인 상담이용료 기준을 반영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9조)

1) 법 제10조의 제목개정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변경함.

나. 상담수수료에 관한 기준 정비(별표1)

1) 별표 1의 제목 중 “(제8조제3항 관련)”을 “(제7조제3항 관련)”으로 수정

2) 같은 표 서식 중 평균과 외부 민간기관 부분을 삭제

3) 같은 표 심리검사 항목 중 종합심리검사(풀배터리) 조정금액을 기존 130,000원에서 150,000원으로 금액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별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4. 2. 29. ~ 2024. 3. 20. (20일)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 등 자료 :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결과

- 인권영향평가 결과 : 검토의견(반영)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평가제외대상
- 아동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구분	검토의견	반영 여부	반영 내용 및 미반영 사유
인권 영향 평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1 주요 심리 검사 및 상담, 치료 교육 수수료 기준” 표에 세부항목에 외래어나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은 한글로 번역하거나 쉬운말로 풀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병기 표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영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1 주요 심리 검사 및 상담, 치료 교육 수수료 기준” 표에 세부항목에 종합심리검사(폴배터리), 문장완성검사(SCT), 다면적 인성검사(MMPI), 잉크반점검사(로샤)를 함께 기재하여 누구나 알기 쉽도록 변경.

5) 법제심사 결과 : 이견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운영위원회)”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위원회의”를 “심의위원회의”로, “운영위원회 운영”을 “심의위원회 운영”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제8조제3항”을 “제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표 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운영위원회)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특별지원 대 상자의 선정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서울특별 시 성북구 <u>지역사회 청소년 통 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u>를 둘 수 있다.</p> <p>② <u>운영위원회</u>는 통합지원체계 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 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 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 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p> <p>③ <u>운영위원회의</u>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절차 등 <u>운영위원 회 운영</u>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p>	<p>제9조(<u>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u>) ① ----- ----- ----- ----- <u>청소년복지심의위원 회(이하 “<u>심의위원회</u>”</u>----- ----- -----.</p> <p>② <u>심의위원회</u>----- ----- ----- ----- -----.</p> <p>③ <u>심의위원회의</u> ----- ----- <u>심의위원 회 운영</u>----- -----.</p>

[별표 1]

주요 심리검사 및 상담, 치료교육 수수료 기준 (제7조제3항 관련)

(단위:원)

구분	세부항목	조정금액
심리검사	종합심리검사(폴배터리)	150,000
	다면적 인성검사(MMPI)	15,000
	지능검사(DSM-Ⅲ)	30,000
	진로검사	10,000
	학습검사	10,000
	잉크반점검사(로샤)	30,000
	문장완성검사(SCT)	5,000
상담	위기청소년	무료
	일반청소년	5,000
	학부모	10,000
치료교육	놀이치료	30,000
	미술치료	30,000

관 계 법 령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② 심의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3. 23.>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 3. 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3. 23.>

[제목개정 2021. 3. 23.]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 연평균 1억원 미만 비용소모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

4. 작성자

복지교육국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